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15 발의연월일: 2023. 1. 17.

발 의 자:김영진·김경협·노웅래

민병덕 • 유정주 • 이수진(11)

이정문 • 이학영 • 임호선

진성준 · 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, 건설폐기물 '배출자'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 · 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'건설폐기물 처리업자'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,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 는 허용보관량 등을 규정하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 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·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·과 징금 처분을 하게 됨.

그러나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

있고, 대형 건설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.

이를 고려하여, 이 법에 규정된 건설페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·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, 과태료처분, 벌금형이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페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위반사실 공표)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 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, 처벌 또는 처분 내용, 해당 사업자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 할 수 있다.

- 1.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
- 2.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벌금형
- 3.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3 전 3 4 조 의 2 (위반사실 공표) ① 환 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 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, 처벌 또는 처분 내용, 해당 사업자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있다. 1.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른 행정 처분 2.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발금형 3.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
	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

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